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3제5호 중 “ 및 2급”을 “, 2급 및 3급”으로 하고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폭발물처리사는 1급, 2급 및 3급으로 한다.

15. 국방드론정비사는 무인항공기,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, 무인항공기는 1급 및 2급으로, 무인비행장치는 단일등급으로 한다.

16.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.

별표 3에 폭발물처리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폭발물 처리사	1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각 군의 폭발물처리 보수과정을 최소 4회 이상 수료한 사람 2. 폭발물처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2급	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3급	국내 또는 외국의 폭발물처리 초급(기본)과정을 이수한 사람

별표3의 군항공기사고구조사란 다음에 국방드론정비사, 방호기술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방드론 정비사	무인 항공기	1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무인항공기 <u>관련 직무¹⁾</u> 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<u>국방드론정비사 무인항공기 2급</u>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, 무인항공기 관련 분야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		2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무인항공기 <u>관련 직무¹⁾</u> 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각 군별 무인항공기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항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, 무인항공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		공통사항	¹⁾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부대 또는 정비지원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업무
	무인 비행장치	단일등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군내 드론 운용 요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.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지도조종자 자격 취득 후 각 군별 드론 운용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. 각 군별 드론 정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방호기술 관리사	1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국방·군사시설 사업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중 방호시설 기술 분야 ¹⁾ 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관련분야 ²⁾ 석사학위 취득 후 방호시설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관련분야 ³⁾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기본교육 ⁴⁾ (90시간 이상)을 이수한 사람 4. 방호기술관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방호시설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	
	2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방호시설 기술 분야 ¹⁾ 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관련분야 ²⁾ 학사학위 취득 후 기본교육 ⁴⁾ (62시간 이상)을 이수한 사람 3. 관련분야 ³⁾ 기사 자격 취득 후 기본교육 ⁴⁾ (62시간 이상)을 이수한 사람	
	공통 사항	¹⁾ 방호시설(기술분야) 경력 : 주요 군사시설 방호기준 방호등급표에 지정된 방호시설(방폭·방탄, 화생방, EMP) 기획, 계획, 연구, 시험, 평가, 진단, 설계, 감리, 시공, 유지·관리 등의 기술업무 ²⁾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<별표2>의 건설, 기계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되는 학과 및 방호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이며, 학과에 대한 인정은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함. ³⁾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<별표2>의 건설, 기계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·기능자격 ⁴⁾ 교육과정은 육군 공병학교 방호시설과정과 대학 및 건설기술교육과정 중 방호시설관련 교육을 <u>의미함</u> .	

별표4의 군 항공기사고구조사란 다음에 국방드론정비사, 방호기술관리사

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방드론 정비사	무인 항공기	1급	필기시험	운영 규정, 장비설명 및 제원, 전자장비정비, 기체 정비, 엔진정비
			실기시험	고장배제 절차, 전자장비정비, 기체정비, 엔진정비
		2급	필기시험	운영규정, 장비설명 및 제원, 기체정비
			실기시험	고장배제절차, 기체정비
	무인 비행장치	단일 등급	필기시험	비행이론 및 비행장치 구성품 운용, 정비실무, 운용규정 및 예방정비
			실기시험	구성품 이론 및 고장배제, 중형정찰 드론 조립

방호기술관리사	1급	필기시험	방탄/방폭 시설평가, 핵 방호계획 및 피해평가,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, EMP 방호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, 방호계획 평가 및 관리체계
		실기(면접)	해당 자격 관련 실무능력 해당 자격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응용 해당 자격에 대한 일반지식 해당자격의 법률 지식
	2급	필기시험	방탄/방폭 시설평가, 핵 방호계획 및 피해평가,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, EMP 방호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, 방호계획 평가 및 관리체계
		실기시험	방호시설(방탄/방폭, 화생방, EMP) 방호능력 평가, 방호계획, 시설 피해평가, 방호능력 계산 및 유지관리분야

별표 4에 폭발물처리사를 다음과 같이 **개정**한다.

폭발 물처 리사	1급	필기시험	폭발물처리 일반, 불발탄 식별·정찰 및 안전조치, 탄약 비군사 화처리, 급조폭발물 처리, 화학탄 처리, 폭발물처리 임무수행 훈련 및 교범 이해
		실기시험	폭발물처리 일반, 불발탄 식별·정찰 및 안전조치, 탄약 비군사 화처리, 급조폭발물 처리, 화학탄 처리, 폭발물처리 임무수행 훈련 및 교범 이해
	2급	필기시험	응용폭과 및 관련규정, 급조폭발물 탐색, 식별 및 비군사화 처리절차
		실기시험	응용폭과, 급조폭발물 탐색 및 처리
	3급	필기시험	기본폭과, 불발탄 탐색, 식별 및 장비사용법
		실기시험	기본폭과, 불발탄 탐색 및 식별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3조의3(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)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83조의3(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)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폭발물처리사 : 1급, 2급	<u>5. 폭발물처리사 : 1급, 2급 및 3급으로 한다.</u>
6. ~ 14. (생 략)	6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5. 국방드론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는 1급 및 2급으로, 무인비행장치는 단일등급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6.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.</u>